

제공일자	2009. 7. 27	담당자	이상우 선임연구원	
홍보담당	김세환 수석(3775-9051)	연락처	3775-9055	총 3 매

제목 : 한·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해 수탁자 제재제도 개선 시급

- 한·일 비교 결과 우리나라의 수탁자 제재제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평가 -

보험연구원(원장 나동민)의 이상우 선임연구원은 최근 발간된 『한·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평가와 개선과제』란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수탁자 제재제도는 일본에 비해 수탁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 및 단속함에 있어서 크게 미흡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별첨1·2> 참고).

수탁자(기업 및 금융기관)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관리 및 운영하는 퇴직연금제도는 사회보장의 한 축으로써 일반 금융상품보다 더 높은 도덕적 의무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수탁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방지하는 심리적인 압박 수단으로써 제재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한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현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제재제도는 퇴직연금사업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로서 사업자등록취소를 제외하면 과태료가 가장 강력한 제재수단이며, 과태료 최고 부과금액을 1천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수준이 금융기관(연금사업자)의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낮다보니 소수의 불건전한 금융기관이 이를 악용할 개연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행할 강제 수단이 부재한 실

정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 기업, 금융기관에 대해 명확한 법률적 책임과 효과적인 제재제도를 갖추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재제도보다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탁자의 위법적인 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 및 방지하기 위해서는 주요 선진국의 제재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내 법질서 환경에 맞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 져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개선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수탁자의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른 다양한 제재수단의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의 또는 거짓, 허위보고, 중요사항의 의도적인 누락, 특별이익 제공 약속 등 수탁자의 불법적인 위반행위는 근로자의 수급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과태료 이상의 제재수단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과태료 중심의 제재제도를 수탁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징역, 벌금, 과징금, 과태료, 행정제재 등으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표1>·<표5> 참조).

둘째, 수탁자 책임의 중요성에 따른 제재수단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과태료 부과 제재만이 존재하므로 일본의 사례와 같이 운영관리기관, 자산관리기관, 기업, 근로자별 책임의 중요도에 따라 차등한 제재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현재 과태료의 최고금액이 1천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으나, 효과적인 제재수단이 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상한액을 수탁자의 경제적 규모에 걸맞게 현실화해 수탁자의 재량권 남용의 개연성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이행시 법적으로 강제 이행할 수 있도록 기간경과시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적극적 회수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섯째,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를 금융관련 법률 및 형법 등의 수준에 맞추어 동일 위반행위에 대해 동일한 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제재제도의 검토가 필요하다. 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행위, 부정한 방법의 등록행위,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 일본은 징역 또는 벌금형으로 제재할 수 있으나

(〈표4〉·〈표5〉참조), 우리나라는 처벌 기준이 없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에 그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보험업법에서는 상기 불법행위의 경우 징역 또는 벌금 형으로 제재할 수 있으며, 특별이익 제공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의 부과가 가능하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kiri.or.kr>

<별첨1>

한 · 일 퇴직연금 수탁자 제재제도 비교 표

가. 양적 비교

<표1> 수탁자 법률 위반 시 제재제도의 비교

구분	일본(②)	한국(①)	차이(①-②)
징역 또는 벌금형	12개 행위	4개 행위	- 8개
벌금형	6개 행위	-	- 6개
과태료	8개 행위	14개 행위	+ 6개
양벌형*	18개 행위	4개 행위	- 14개

주 : *는 행위자 처벌 이외에 개인·법인에게도 벌금형 부과형

<표2> 사용자 법률 위반 시 제재제도의 비교

구분	일본(②)	한국(①)	차이(①-②)
징역 또는 벌금형	1개 행위	4개 행위	+ 3개
벌금형	-	-	-
과태료	7개 행위	1개 행위	- 6개
양벌형	1개 행위	4개 행위	+ 3개

<표3> 퇴직연금사업자 법률 위반 시 제재제도의 비교

구분	일본(②)	한국(①)	차이(①-②)
징역 또는 벌금형	11개 행위	-	- 11개
벌금형	6개 행위	-	- 6개
과태료	1개 행위	13개 행위	+ 12개
양벌형	18개 행위	-	- 18개

나. 질적 비교

<표4> 퇴직연금사업자의 법률 위반 시 제재제도 비교

가입자의 보호규정	일본			한국		
	징역	벌금	과태료	징역	벌금	과태료
손실부담 행위	●	●	-	-	-	●
특별이익 제공약속	●	●	-	-	-	●
자료의 고의·거짓 작성	●	●	-	-	-	●
취급 실적 미제출	●	●	-	-	-	●

<별첨2>

퇴직연금 수탁자 벌칙 한·일 비교 표

<표5> 수탁자 법률 위반 시 제재제도 비교 : 일본 기준

구분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일본			한국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유무	제재유무
사용자	사용자 보고징수 및 임점검사위반	●	●	-	-	-
	사용자 규약 변경시 미신고, 허위신고	-	-	●	-	-
	사용자 장부 미보존 및 허위작성	-	-	●	-	-
	사용자 기한내 미보고 및 허위보고	-	-	●	-	-
	사용자 개선명령 이행위반	-	-	●	●	-
	사용자 규약 변경 통지위반	-	-	●	-	-
	사용자 기록관리기관에 정보 미통지	-	-	●	-	-
퇴직연금사업자	연금사업자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	●	-	●	-
	운용관리업의 명의 대여금지	●	●	-	-	-
	연금사업자 추가이익보장금지	●	●	-	-	-
	연금사업자 중요사실 미고지의 부실고지	●	●	-	-	-
	연금사업자 업무정지 명령 후 업무영위행위	●	●	-	-	-
	연금사업자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	●	-	●	-
	연금사업자 보고징수 및 검사위반	●	●	-	●	-
	연금사업자 변경 신고위반	-	●	-	●	-
	연금사업자 영업소 표식 비치위반	-	●	-	-	-
	연금사업자 이외의 자 표식 게시	-	●	-	-	-
	연금사업자 열람거부 또는 허위기재	-	●	-	-	-
	연금사업자 운영개선 명령위반	-	●	-	●	-
기타	가입자의 통지위반	-	-	●	-	-
	IRA가입자 기록관리기관에 미신고	-	-	●	-	-
	사용자·기관·가입자 기한내 미신고	-	-	●	-	-

주: 1.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대상
2. 일본의 벌칙조항을 기준으로 한국을 비교

<표6> 수탁자 법률 위반 시 제재제도 비교 : 한국 기준

구분	수탁자의 책임 및 의무	한국			일본	
		징역	벌금	과태료	규정유무	제재유무
사용자	사용자의 퇴직금 기한내 지급위반	●	●	-	●	-
	사용자의 사업안의 차등 금지위반	●	●	-	●	-
	사용자의 근로자 동의위반	●	●	-	●	-
	사용자의 의견 청취 등 위반	●	●	-	●	-
	사용자의 교육실시위반	-	-	●	●	-
	사용자가 다른 목적으로 계약체결	-	-	●	●	-
퇴직연금사업자	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거부	-	-	●	●	-
	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근거 없는 판단 제공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목적 이외에 정보 이용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운용지시 정보 유출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	-	●	●	-
	연금사업자의 특정 운용방법을 제시위반	-	-	●	-	-
	연금사업자의 계약내용 준수위반	-	-	●	●	-

주: 1. 형벌 및 금전적 제재를 대상
 2. 한국의 벌칙조항을 기준으로 일본을 비교